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 가합 2008 면직처분무효확인
원 고 1. 신기열
2. 박석순
3. 전대성
4. 심한억
5. 사재학
6. 강혜원
7. 이정하
8. 김재수
9. 석재현
10. 김성욱
11. 황경충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피 고 학교법인 애광학원
경산시 평산동 270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 2 동 173-4
대표자 임시이사장 정한영
변 론 종 결 2006. 6. 7.
판 결 선 고 2006. 6.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 신기열, 원고 박석순, 원고 전대성, 원고 강혜원, 원고 김재수, 원고 석재현에 대한 2002. 2. 28.자, 원고 심한역, 원고 사재학, 원고 이정하, 원고 김성욱, 원고 황경충에 대한 2001. 3. 3.자 각 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 1 항 및 피고는 원고 신기열, 원고 박석순, 원고 전대성, 원고 김재수, 원고 석재현에 대하여는 각 12,000,000 원, 원고 강혜원에 대하여는 16,500,000 원, 원고 사재학, 원고 이정하, 원고 심한역에 대하여는 각 36,000,000 원, 원고 황경충에 대하여는 24,000,000 원, 원고 김성욱에 대하여는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신기열, 원고 박석순, 원고 전대성, 원고 김재수, 원고 석재현, 원고 강혜원에 대하여는 각 2002. 3. 1.부터, 원고 사재학, 원고 이정하, 원고 심한역, 원고 황경충, 원고 김성욱에 대하여는 각 2001. 3. 14.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미래대학을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되어 위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는데(다만, 원고 강혜원은 조교수로 근무하였다), 원고

신기열, 원고 박석순, 원고 전대성, 원고 강혜원, 원고 김재수, 원고 석재현은 2002. 2. 28.자로, 원고 심한익, 원고 사재학, 원고 이정하, 원고 김성욱, 원고 황경충은 2001. 3. 3.자로 재임용이 거부되었고, 그 무렵 재임용거부처분을 통지받았다(이 사건 다툼의 대상이 재임용거부처분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유효성을 다투는 동시에 원고들이 2000. 9. 1.자로 위 대학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었음을 전제로 면직되었다는 취지로도 면직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각 일자의 재임용거부통지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재임용거부처분과 같은 의미로 면직처분을 사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12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은 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라 피고가 유지·경영하는 대구미래대학과의 교원신분관계가 종료되었고, ②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 및 통지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 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교원은 이에 대한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익이 없다고 다룬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임용기간 만료시점에 적용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 5004 호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 73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 조의 2 제 3 항과 연혁만 다를 뿐 그 규정 내용이 똑같은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 60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 조의 2 제 3 항 전문이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거부사유와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재임용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사후에 이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헌법 제 31 조 제 6 항 소정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 헌바 14, 32(병합)결정}과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 두 7735 판결)의 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정당한 평가를 거쳤을 경우 원고들의 재임용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원고들의 위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징계처분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 할 것인바, 이를 단순히 임기만료로 인한 당연 퇴직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법인 제 182 회 이사회 회의에서 당시 계약제 교직원들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정관 및 교칙상 처우와 신분에 있어 계약제와 큰 차이가 나는 기간제 교원으로서의 임용을 의결하여 원고들은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되어 실질적으로도 기간제 교원으로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보수까지 받던 신뢰관계 중에, 피고 법인 내부 사정으로 교육부 관선이사회 체제가 시작되면서 원고들을 면직하였는바, 위 면직처분은 종전의 객관적 평정기준표를 무시하고 임의의 주관적 평정기준표에 따른 것으로 본인들에 대하여 소명과 변소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 182 회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기로 의결한 바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의결은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곧바로 원고들과 사이에 교원임용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② 원고들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용기간 종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특약이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분관계는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을 뿐이지 피고가 원고들을 면직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규정

(가) 현행 사립학교법의 적용 여부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과 그 소급효의 인정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심판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제외하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 다 6247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입법자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부칙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제 3 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상황

헌법재판소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제 3 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00 헌바 26)을 함에 따라 2005. 1. 27. 법률 제 7352 호로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에 재임용 심사 절차 및 재임용 심사 사유, 구제절차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위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기간제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미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3) 이 사건에 있어서 개정 사립학교법 적용 여부

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구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규정이 객관적인 내용의 재임용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학교재단 측의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전, 사후 구제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② 위와 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부칙규정이 개정 법률의 소급효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사립학교법과는 별도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2005. 7. 13. 제정·공포됨으로써,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그 부칙에서 그 적용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 한정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이미 재임용에서 탈락함으로써 인하여 재직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구제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법자는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그 취지를 반영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는 장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대신, 이미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들은 한시적인 특별법을 통하여 구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ㄴ. 따라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그 부칙에 정한 바에 따라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이미 그 이전에 재임용에서 탈락함으로써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 당시 재직 중이 아닌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나) 기간임용제와 관련된 구 사립학교법 규정

◎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 6004 로 개정되고, 2005. 1. 27. 법률 제 73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사건 각 면직처분 당시 적용된 법 제 53 조의 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999. 8. 31. 본항신설)

(3)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부터 2000. 10.까지 진행된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2000. 12. 1. 당시 피고 이사장 고은애 등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피고 및 대구미래대학은 관선이사회 체제로 운영되었다.

(나) 2001. 2. 7. 피고 산하 대구미래대학은 2000. 9. 1.자 미임용 계약직 교원과 2001. 2. 28.자 계약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임용 심사서류 제출통지를 하였던바, 그 내용은 2001. 2. 12. 14:00 까지 이력서, 학력 및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연구실적목록 및 연구실적물(임용 기간 내) 등을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다) 2001. 3. 3. 개최된 제 88 차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과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평가에서 60 점 이하로 평점을 받은 계약직교원인 원고들을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하였고, 대구미래대학장은 2001. 3. 5.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들을 계약직 교원 면직 대상자로 제청하였는데, 위 제청 공문에 첨부된 계약직 교원 평정 심사조서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성 명	특기사항	평점	심사위	인사위
1	이정하	학위기준 미달	22	부	부
2	신기열	전공중복, 인화도문제, 평점부족	49	부	부
3	박석순	연구실적부족(140%)	52	부	부
4	사재학	감봉 1 개월, 경고, 인화도	43	부	부
5	석재현	평점미달, 학과소견서 의견 추상적	45	부	부
6	김재수	연구실적 부족, 교수간 불화	40	부	부
7	전대성	전공분야 부적절, 평점부족	50	부	부

8	심한익	연구실적 부족(180%), 교직원간 불화도문제	45	부	부
9	강혜원	전공불일치	-	-	부
10	황경충	전공불일치	-	-	부
11	김성욱	언론기사(개인사생활로 법원판결 받은 바 있음), 휴강과 학생민원(자료첨부)	-	-	부

(라) 2001. 3. 5. 개최된 피고의 제 194 회 이사회는 계약제 교원이던 원고 이정하, 원고 사재학, 원고 심한익, 원고 김성욱, 원고 황경충을 평가점 미달의 사유로 재계약에서 제외하여 2001. 3. 3.자로 각 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1 년간 재계약을 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그 후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고 산하 대구미래대학장은 2001. 3. 13.경 원고 이정하, 원고 사재학, 원고 심한익, 원고 김성욱, 원고 황경충에게 2001. 3. 3.자 계약만료에 따른 해임발령과 2001 학년도 1 학기 강의를 할 수 없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2001 년 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2002. 1.경 실시된 학과심사평가결과 원고 신기열은 종합평점 49 점으로 “부”, 원고 박석순은 종합평점 57 점으로 “부”, 원고 석재현은 종합평점 42 점으로 “부”, 원고 김재수는 종합평점 37 점으로 “부”, 원고 전대성은 종합평점 42 점으로 “부”, 원고 강혜원은 종합평점 29 점으로 “부”로 각 평가를 받았다.

(바) 2002. 2. 25. 개최된 피고의 제 207 회 이사회는 임용기간이 2002. 2. 28.로 종료되는 계약직 교원인 원고 신기열, 원고 박석순, 원고 석재현, 원고 김재수, 원고 전대성, 원고 강혜원에 대하여 학과심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로 판정되었으므로 재임용에서 제외하여

2002. 2. 28.자로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해임발령을 통지(이하 ‘이 사건 2002년 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사) 한편, 피고의 재임용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대구미래대학 교원임용 규정

제 15 조(재임용) ① 제 5 조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전임교원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재임용한다.(개정 2002. 2. 22.)

1.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교원은 제 12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에 의한다.(개정 2002. 2. 22.)

2.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교원재임용 및 승진임용 평정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심사시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2.)

② 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교원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근무기간 종료일 2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2. 2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문 생략), 제 15 조 제 2 항 및 제 15 조의 2 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제 15 조 제 1 항 제 2 호의 현재 재직 중인 교원 중 기존의 계약직 교원의 경우에는 계약직교원 심사평정 시행세칙에 의하여 평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공정택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 단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보건대, 위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 헌바 14, 32(병합)결정에서 든 ① 객관적인 기준의 재임용 거부사유, ②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③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 등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에게는 재임용 거부를 상당한 기간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교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이정하, 원고 사재학, 원고 심한익, 원고 김성욱, 원고 황경충의 경우 피고 산하 대구미래대학장이 2001. 3. 13.경 2001. 3. 3.자로 면직되었음을 사후에 통지한 사실, 원고 신기열, 원고 박석순, 원고 석재현, 원고 김재수, 원고 전대성, 원고 강혜원의 경우 임용기간이 2002. 2. 28. 종료됨에도 임용기간 종료 직전인 2002. 2. 25. 피고의 제 207 회 이사회에서 위 원고들에 대한 면직이 의결되어 그 무렵 위 원고들에게 2002. 2. 28.자로 면직됨이 통지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대구미래대학 교원임용 규정에 의하면 근무기간 종료일 2 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다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2 년 9 월 1 일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여 위 원고들의 경우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받을 수 없었던 점, 재임용에서 탈락한 원고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적절한 절차가 보장되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재임용 거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재임용에서 탈락하게 되는 교원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이 명백하므로, 나아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나. 급여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급여를 구하는 근거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선해하여
보면, 자신들이 2000. 9. 1.자로 피고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되었거나, 또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 임용계약 또는 재임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보장된 임용기간까지의 급여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이 2000. 9. 1.자로 피고에 의하여 기간제 교원으로
재임용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 호증, 갑
8 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증인 이충원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공정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이사회가 전 이사장
고은애와 그의 차남인 이근민 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전 이사장의
장녀인 전 학장 이예숙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양분되어 이사회가 파행됨에
따라 2000. 9. 1.자 계약직 교수 임용문제를 의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되어 피고 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 혹은 면직처분이 당연
무효인 점은 이미 본 바와 같으나, 그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종전의

임용계약과 같은 조건의 재임용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구 사립학교법 제 53 조의 2 제 3 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간임용제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도 기간을 정한 대학교원 임용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의 근간을 토대로 보건대, 기간을 정한 교원임용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 다 52647 판결 참조).

결국, 재임용거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므로 재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 일지라도 다시 재임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교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재임용 거부결정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교원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자신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교원의 지위확인을 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고들이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급여 및 자연이자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승 _____

 판사 강현구 _____

 판사 김수영 _____

별지

원고들의 신규임용, 재임용 내역

순 번	원 고	신규임용	재 임 용	
1	신기열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2	박석순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3	전대성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4	심한익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	
5	사재학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6	강혜원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7	이정하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8	김재수	1999. 3. 1.부터 2000. 2. 28.까지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9	석재현	1998. 9. 1.부터 1999. 8. 31.까지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2001. 3. 1.부터 2002. 2. 28.까지
10	김성욱	1999. 9. 1.부터 2000. 8. 31.까지		
11	황경충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		